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2. 6. 9 선고 2022가단10126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와 2018. 4. 17. 접수 제238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정하경